

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

「자격기본법」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등록관리자의 성명		자격의 종목 및 등급			
상호명	대표자명	등록번호	자격명	등급명	폐지사유
(사)한국능력교육개발원	전석한	2016-001881	디지털장 의사	등급 없음	자격수요 미흡

2020. 12. 17.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